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83호
- 나. 제출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금천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연령 기준 수정(안 제3조제1호)
- 나. 중복 조항 수정(안 제5조)
-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수정
(안 제9조제5항제4호)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조례의 청년의 연령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만15세이상~29세이하(시행령 34세이하)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19세이상~39세 이하로 개정하고
 -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이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청년의 연령 규정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정책 목표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령 및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청년 기본법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공급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본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킨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 수행 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우위를 명시한 법제처의 해석(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참조)에 정합하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기업부부장관 · 금융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 실무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33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2023.5.22, 2023.7.18, 2024.5.20>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